

2020. 07. 11. 국가직 9급 세법개론 B책형 해설 및 총평

공단기고시학원 세법 전임
이진욱 세무사

[총평] 2020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시험문제의 수준에 대하여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강사가 공무원강의를 시작한 이후 약 16년 간 치루어진 시험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된다.

출제범위는 국세기본법 4문항, 국제징수법 2문항, 법인세법 6문항, 소득세법 3문항, 부가가치세법 5문항의 구성으로 최근 7급에 이어서 9급 시험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법인세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역대 최상으로서 본 강사의 주관적 입장에서 판단한 문항별 난이도는 상수준 6문항, 중수준 10문항, 하수준 4문항이 출제되어, 통상적 시험에서의 난이도를 훌쩍 뛰어넘는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12번 문제로 출제된 법인세법 기부금 문제는 정답가안이 2번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출제오류문항으로서 “정답없음”으로 처리되어 모든 학생의 답안이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문항에 대하여는 본 강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시험연기로 인해 국가직보다 지방직은 먼저 치뤄지고, 또 그 이후 짧은 기간동안 7월 11일로 연기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노력을 해왔던 우리 세무직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이 정도로 과도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할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시험 당일 출제오류까지 포함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느라 고생한 우리 자랑스런 세무직 세법선택 수험생들에게 한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본 강사가 장담컨대, 세법선택으로 인한 오늘의 어려움은 분명 얼마전 지방직 지방세법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다른 선택과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월등한 조정점수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확정시행되는 7급 시험제도, 후년부터 확정시행되는 세법 필수과목제도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험출제의 내용과 방식을 보여주는 시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내년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평이한 문제를 대비했던 단순 암기식의 공부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법이라는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본 강사가 항상 강조하는 “이해를 위한 논리적인 세법”으로서의 수험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공단기고시학원 세법전임 이진욱세무사)

1. 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

-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
-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 ㉢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임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법법 제59조①).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 ②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중)

-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 회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 ②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 계상하였다.
- ③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법인이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아님)을 손익계산서상 수익 계상하였다.

정답> ④

해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국고보조금 등 제외)은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3.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 ① 기한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에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정답> ②

해설>

- ① 기한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

가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수정신고라면 해당 수정신고는 확정력을 가진다.

- ④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는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로서 확정력을 가지지 못하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4.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② 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본다.

5. (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원과 2천만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상)

- ① 8백만원 ② 1천만원 ③ 1천2백만원 ④ 2천만원

정답> ②

해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text{외국자회사소득금액} - \text{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즉, 외국자회사가 A국에 납부한 법인세액(2천만원) 중 “외국자회사의 세후소득금액 8천만원(1억 - 2천만원) 중 (주)대한에 배당금으로 지급한 4천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50%(4천만원/8천만원)를 곱하여 계산된 1천만원이 된다.

6.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 ①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내국인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③

해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7.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상)

구 분	금액	인도시점	대가수취시점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	5,000,000원	2020년 6월 25일	2020년 7월 25일
재화의 외상판매	3,000,000원	2020년 6월 25일	2020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	4,000,000원	2020년 7월 25일	2021년 7월 25일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의 대가 전부를 받고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6,000,000원	2020년 7월 25일	2020년 6월 25일

※ 장기할부판매는 매년 동일한 시점(5년간)에 대가를 수취하고 있음

※ 대가(의 각 부분)를 받기로 한 때와 대가 수취시점은 동일하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① 5,000,000원 ② 7,000,000원 ③ 9,000,000원 ④ 11,000,000원

정답> ①

해설> 각각의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력의 계속적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인 2020년 7월 25일이므로 해당 **5,000,000원**은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② 외상판매의 경우는 대가수취시점에 불문하고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3,000,000원은 2020년 6월 25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2020년 제1기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해당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1년 7월 25일부터 매년 제2기 과세표준에 해당 대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2020년 제2기에 포함되는 과세표준은 없다.
- ④ 세금계산서 선발급특례로서 원칙적공급시기에 불구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20년 6월 25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2020년 제1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8.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③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해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

- 1.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지문의 내용은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 제시되었으므로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9.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

- ①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10.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중)

- ①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다.
-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 ③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의 국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 즉,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가 발급된 국세에 대하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

-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부가법 제8조 ⑧)

1. 폐업한 경우
2.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2.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제오류_이의제기 대상)

-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한다.
- 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④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정답없음

해설>

-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현물기부시 평가금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②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출제오류 : 출제자는 해당 지문을 옳은 지문으로 출제하였으나, 해당 지문은 2019년 12월 31일 세법 개정 전의 조문으로서,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에 지출된 법정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게 되었으므로, 제시된 지문처럼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은 해당 연도의 법정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는 개정전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엄연히 틀린 지문에 해당한다. 출제 오류로서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 ④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현금주의).

13.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하)

- ①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 ②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 ③ 내국법인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 ④ 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의 거래들이므로, ①,②,③번 지문은 모두 해당 법인에게 유리한 이익이 되는 거래, ④번 지문 만이 해당 법인이 손해를 보는 거래가 된다.

14.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

- 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 ②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 ③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공부(公簿)상의 용도에 주택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 ④ 관련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 ④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방식으로서 과세대상 상장주식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주식을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15.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

- ① 「국세기본법」은 공유물(共有物)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③

해설>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법 제2조 ④).

-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16.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

-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② 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특정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관련하여 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處分)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법법 제73조 ③).

17.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관련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②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간주한다.
- ③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이 아님)에 우선하는 저당권부채권이 있고, 국세채권이 그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 ④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8. 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

-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님)은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 ③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②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중 불복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 ④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

19.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

- ① 서류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 ②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④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③

해설>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

- ①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②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③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④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정답> ②

해설> 해당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